

『구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상위법 개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, 각 기구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및 관련 기관·단체와 연계를 강화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용어 정의(안 제2조)
-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각 기구별(대표협의체, 실무협의체, 실무분과, 읍면동협의체, 사무국) 구성과 역할 명시(안 제4조~제7조, 제13조)
- 각 협의체 등의 위원 임기, 위촉 등에 관한 사항 명시(안 제9조~제12조)
- 회의록 공개의 의무 명확화 (안 제15조제2항)
- 대표협의체 의결사항에 대한 시장의 시책 반영 노력 명시(안 제17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
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전부개정조례안은

- 구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각 기구별 구성과 역할, 기능에 관하여 상세하게 명시하고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, 회의록 공개 의무, 시책 반영 노력 등을 명시하고자 하는 안임.

○ 검토 결과,

-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각 기구별 역할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혼가구, 독거노인 등 손길이 닿지 않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더욱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, 지원 연계를 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 복지사회 실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 회의록 공개 의무를 통해 협의체 운영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대표협의체 의결사항을 시책 반영에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구미시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